

제2023-33호 2023년 4월 12일(수)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155호	도로구간 변경 설정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1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3-15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3-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면적, 목적) 허가 고시	6
○ 여수시 고시	제2023-1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23-16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웅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 여수시 고시	제2023-1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9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1101호	2023년 어선원 직불제사업 모집 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3-1144호	2023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23-1145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20
○ 여수시 공고	제2023-1150호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23-1162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25
○ 여수시 공고	제2023-1164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9
○ 여수시 공고	제2023-1165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54
○ 여수시 공고	제2023-1168호	라-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57
○ 여수시 공고	제2023-1169호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23-1173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1
○ 여수시 공고	제2023-1174호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	62
○ 여수시 공고	제2023-1177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농가 준수사항 방역기준 변경 공고	76
○ 여수시 공고	제2023-1181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둔전리 산105번지)	84
○ 여수시 공고	제2023-118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웅천동 188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86
○ 여수시 공고	제2023-1192호	2023년 여수시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 매각단가 입찰공고	96
○ 여수시 공고	제2023-1193호	2023년 여수시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인고트)) 매각단가 입찰공고	103
○ 여수시 공고	제2023-1196호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9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6.

여 수 시 장 (인)

1. 고 시 일 : 2023년 4월 6일
2. 고시방법 : 시군구보, 여수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 장수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종속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도로 위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설정 사유
			시작 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로	장수로	화양면 장수리	화양면 장수리 142	화양면 장수리 1416	166-1	166-36	140.31	3.0	10	1차 종속도로 연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 적	허가받은 자		변경사항(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13-016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87-27 지선 공유수면	126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길 15	금강수산 김강년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17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82-19 지선 공유수면	146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18-1	금진수산 김명하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18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82-34 지선 공유수면	48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34	성기수산 김성기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19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89-9 지선 공유수면	50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33-14	가든수산 김성기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0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918-5 지선 공유수면	97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33-6	해운수산 김윤범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1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82-17 지선 공유수면	168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13	진동수산 김진항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2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87-6 지선 공유수면	30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27-1	태영수산 김춘석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3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40-18 지선 공유수면	29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18-31	해풍수산 김현오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4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72-30 지선 공유수면	137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228	정진수산 서호진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6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72-26 지선 공유수면	141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서로 181, 608-509	이성재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7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41-14 지선 공유수면	43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18-25	항대수산 이덕현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28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30-17 지선 공유수면	148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28-1	태경수산 이성규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0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88-9 지선 공유수면	32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32	금천 유통수산 이정인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1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40-18 지선 공유수면	37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18-48	영덕수산 장덕운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2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385-17 지선 공유수면	343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33-11	전일수산 전화연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4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19-41 지선 공유수면	15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금천길 43	우영수산 조인숙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6 ('23.4.6.)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357-7 지선 공유수면	296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33-22	황진수산 황진오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23. 4. 10.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7.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여수시 고시 제2023-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면적, 목적)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기간	허가받은 자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11-015 (’23.4.7.)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24-2지선 공유수면	’21. 5. 1. ~ ’26. 4. 30.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김성환]	1,302㎡	1,305㎡	일반조종 면허시험 접안용부선 및 제이프로트 설치	일반조종 면허시험 접안용부선, 제이프로트 및 사행부이 설치

2023. 4. 10.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 - 1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 적	허가받은 자		변경사항(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13-029 (2023. 4. 10.)	돌산읍 평사리 989-24 지선 공유수면	103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돌산읍 평사로 250	태진수산 이성근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3-035 (2023. 4. 10.)	돌산읍 평사리 1020-20 지선 공유수면	300	수산물 및 어구하역용 호이스트 운영	돌산읍 금천해안길 30	조현두 외 1	2018. 4. 22. ~ 2023. 4. 21.	2023. 4. 22. ~ 2028. 4. 21.
2018-062 (2023. 4. 10.)	율촌면 상봉리 863 지선 공유수면(육상)	28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진출입로	율촌면 두언길 106-27	㈜유지컬 마을 [류성신]	2018. 5. 4. ~ 2023. 5. 3.	2023. 5. 4. ~ 2028. 5. 3.

2023. 4. 12.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계획시설(웅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웅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4. 12.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웅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웅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 - 1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 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3-8 (2023. 4. 11.)	여수시 소호동 1231-1번지 일원	363	송소항 선착장 보강공사 (테트라포드 설치)	2023. 4. 11. ~ 2053. 4. 1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023. 4. 12.

여 수 시 장

2023년도 어선원 직불제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라 2023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23. 4. 3.

여 수 시 장

1. 대상사업 : 2023년 어선원 직불제사업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22.1.1. ~ 12.31. 혹은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승선기록이 있는 어선원
-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제외 대상
 - 외국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이상
 - 선주와 가족 관계인 어선원(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어선의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

3. 지급 제외 대상

- 교육 미이수, 수산업법 위반 등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 활동을 유지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4. 신청기간 : '23. 4. 3.(월) ~ 5. 31.(수)

5. 신청장소 : 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

6.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어선원승선사실확인서(선주확인 직인 필수)
- 어선원부(어선번호 알아야함) 또는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택 1
- (근로계약서와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해경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경또는 정부24에서 발급) 택 1]
- 통장사본

7. 지급대상자 선정 : 행정정보 및 시스템 검증 등 지급요건 적격 여부 검토 후 선정

8. 지급요건

- 지급 확정일까지 어선원 유지
- 공익기능 교육 이수
- 그 밖에 전산시스템 검증 후 현장점검 결과 적절성 등

9.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20만원

10.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법상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타 직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등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659-3918) 또는 선적항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근해어업 허가어선[]								연안어업 허가어선[]								구획어업·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신청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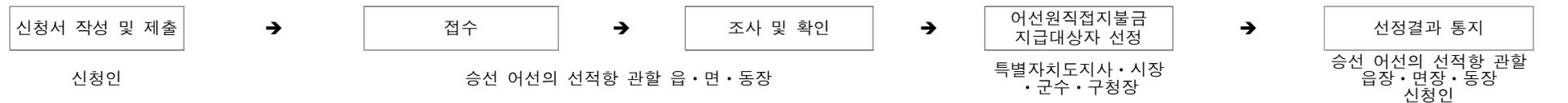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 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년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202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사업 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6.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2023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 사방댐)
2. 공고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3. 대 상 지: 붙임내역 참조
4. 사용내용: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임시도로 일시 사용, 입목·토석 채취 등 산사태 예방 공사에 포함된 공종 일체
5. 사업기간: 2023년 04월 ~ 06월 (또는 사업 종료 시)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7. 발 주 처: 전라남도 여수시청
8. 공고내용: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고
9. 게시장소: 게시관 및 홈페이지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61-659-4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사업 예정지 필지별 내역 1부. 끝.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이온텍주식회사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38, 216호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여수-23-파-03	기계설비공사	2023.04.06.

2023년 4월 6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주변 호객행위 단속 및 각종 사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주변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 가. 사 업 명 :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주변 CCTV 설치 공사
- 나. 시행기관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다. 공고기간 : 2023. 4. 7.(금) ~ 4. 26.(수) 20일간
- 라.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4. CCTV 설치 계획

- 가. 수 량 : 3대
- 나. 시 기 : 2023. 5월 중
- 다. 위 치 : 전남 여수시 종화동 458-4 인근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 기간 내에 여수시 식품위생과(☎061-659-42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 2023. 4. 7.(금) ~ 4. 26.(수), 20일간

다. 제출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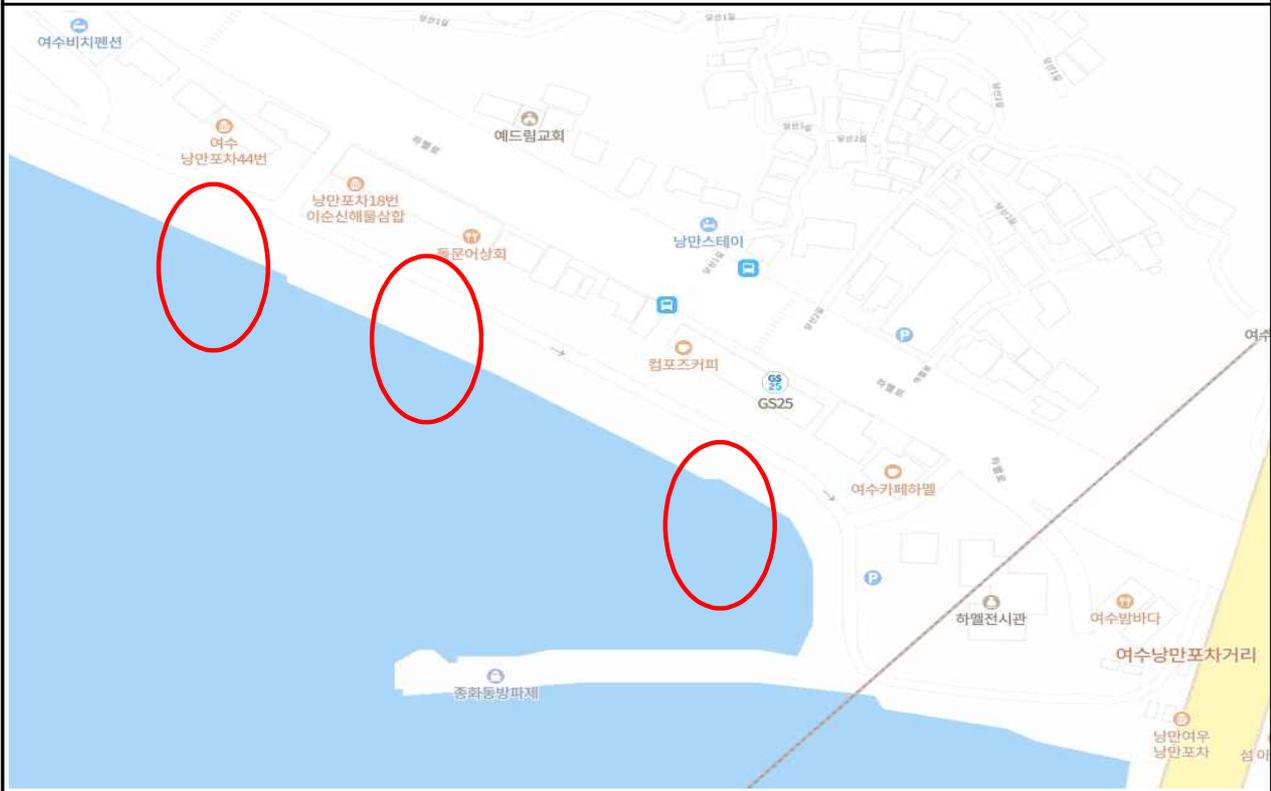
- 방문/우편 :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식품위생과 (우)59646
- 팩 스 : 061-659-5855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마. 문의사항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061-659-423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여수시 이순신광장로, 해양공원 내)



위성 현장사진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4. 7.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 목적: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
- 사업내용: 주택, 상업·공공 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 및 마을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비를 설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실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국비 집행을 감안하여 선정 후, 계약시 별도로 정함.

○ 모집대상

구분	대상지역	에너지원	비고
여수시	울촌·소라·화양·화정·삼산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융·복합 모델대상	

* 컨소시엄 선정 후 사업대상 수요조사 진행

2.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업체와 모니터링업체, 설계·감리업체 등으로 참여업체를 구성하고 태양광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
- 시공업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모니터링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 설계·감리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및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 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7.(금) ~ 4. 19.(수) 12:00까지
- 공고장소: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 접수장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상용화사업실(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177, 2층)
※ 접수 담당자: 이승주 과장 061)288-1061, 전지은 연구원 061)288-1063
-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출공문, 신청서,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사업제안서 및 PPT 발표 자료 10부, 발표자료 저장용 USB

4. 평가절차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붙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참조)

- 선정방법은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참여업체로 선정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량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가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선정

○ 평가일시/장소 : 2023. 4. 25.(화) 13:30 / 녹색에너지연구원 세미나실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하며 상세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5.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2023. 4월 말 *공문 통보 예정

○ 선정결과 공고: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고시/공고)

6. 추진절차



7. 기타(특기) 사항

-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용·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내용에 따름(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공고 전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여수시의 여건과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본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용·복합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미 선정시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 참여업체는 태양광 관련업체가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여야 함
- 참여업체 선정은 컨소시엄 1개 접수 시에도 평가 진행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가 부담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가 컨소시엄 대상자로 승계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선정된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해선 필요시 기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태양광 시공업체는 사업 예정지역 내 관할 한전에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붙임 1. 용복합 지원사업 참여업체 평가지표 1부
 2. 용복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업체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 량 (40)	시공능력* (37)	기술인력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시공실적	7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
		신용도	5	컨소시엄 시공업체 신용등급
		A/S 전담업체 지정여부	5	A/S 전담업체 지정여부(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참여도	5	컨소시엄 시공기업의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실적
	컨소시엄 기업소재지	10	해당 지역 및 도내기업 소재 사항	
모니터링능력 (3)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비 계 량 (60)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민원, 인·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참여기관 (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전체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전체 참여기관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23)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5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적정성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6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6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7)	사후관리 계획	7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수행중 안전관리	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5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합 계			100	

- * 본 평가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 공고이며, 공모 사업에 탈락시 컨소시엄은 그 효력이 소멸 됨.
- * 공모 탈락시 지자체 및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사업대상지 전수조사 등 사업공모 준비기간에 발생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 컨소시엄(전체) 평가 세부기준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3 정부보급사업 참여시공기업 선정기준’ 준용
- * A기업이 태양광, 태양열 등 2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신청한 경우 각각 에너지원별로 점수 산정

① 기술인력(총점 5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3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3.0	3.0	3.0
	② 6인	1.7	1.8	2.0
	③ 5인	1.3	1.7	1.8
	④ 4인	1.0	1.5	1.7
	⑤ 3인	0.7	1.0	1.5
	⑥ 2인	0.5	0.7	1.0
	⑦ 1인 이하	0	0	0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0	1.0
	③ 5인	0.8	1.0	1.0
	④ 4인	0.7	0.8	1.0
	⑤ 3인	0.5	0.7	0.8
⑥ 2인	0.3	0.5	0.7	
⑦ 1인 이하	0	0	0	

-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에너지 설치업체 참여율(태양광 60%, 기타발전원 40%) 곁한값을 더하여 환산평가
예) 기술인력 보유현황: (태양광 점수 * 60%) + (태양광 외 발전원 점수 평균 * 40%)

- 기술인력 근무경력(2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태 양 광	기 타	배 점
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2.0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1.7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1.3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0.7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0.8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0.7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0.5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3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에너지 설치업체 참여율(태양광 60%, 기타발전원 40%) 곁한값을 더하여 환산평가
예) 기술인력 근무경력: (태양광 점수 * 60%) + (태양광 외 발전원 점수 * 40%)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컨소시엄 업체 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함께 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총 5점 만점으로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신청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 에너지원별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5.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6.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7.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8. 기술인력보유 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 보험 가입서류(화면인쇄 불인정)
 - *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시는 불인정
9. 기술인력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0.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20개월 + 홍길순 3개월)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 홍길동이 한국업체(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업체(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12. 투입인력 기술인력은 전기, 토목, 기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및 경력만 인정
13. 재직중에 취득한 자격증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② 시공실적(총점 7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 설치용량(4점)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kW)	기타(kW, ㎡)	배 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4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3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2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1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0

○ 설치개소(3점)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수 열	기 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3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2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1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

※ 에너지 설치업체 참여율(태양광 60%, 기타발전원 40%) 곱한값을 더하여 환산평가
 예) 설치용량: (태양광 점수 * 60%) + (태양광 외 발전원 점수 평균 * 40%)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각 컨소시엄 내 배점을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확인서로 제출 가능(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은 제외),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단,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불인정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발주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공고일 이전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 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필요시 현장 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신용도(5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업체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5
	업체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4
	업체신용평가등급 BB+, BB0, BB-	3
	업체신용평가등급 B+, B0, B-	2
	업체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 컨소시엄 시공업체별 점수의 평균으로 함

<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 처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한 신용정보업자(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www.fss.or.kr))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④ A/S 전담업체 지정여부(5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2개)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1개) 지정	없음
배점	5	3	0

※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지정서 첨부

⑤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5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융복합지원사업 3회 이상	융복합지원사업 2회	융복합지원사업 1회	융복합지원사업 미참여
태양광	3	2	1	0
기타발전원	2	1	0.5	

※ 적용기간: 최근 5년(2018년 ~ 2022년)

※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합계의 한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⑥ 컨소시엄 기업 소재지(10점) * 컨소시엄 전체 참여기업 평가함

구분	참여업체 중 2개 이상이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중 1개 이상이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모두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일부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배점	10	7	4	1

※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뜻함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공고일 이전 기준)

⑦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3점)

구분	98.0% 이상	98.0% 미만 ~ 95.0%	95.0% 미만 ~ 90.0%	90.0% 미만
배점	3.0	2.5	2.0	1.5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연동률) 게시

※ 연동률은 '23. 1월부터 접수 전월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신규업체는 기존 인증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 신규업체를 제외한 기존 인증업체의 평균점수를 구한 후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일 경우 2.9점 부여, 2.8점일 경우 2.8점 부여

* 신규업체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 평가를 위해 非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시공

□ 비계량평가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합계	60					
비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5	3	1
		민원, 인·허가	4	3	2	1
계	참여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4	3	2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4	3	2
량	사업추진 (23)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5	4	3	2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6	5	4	3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5	4	3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6	5	4	3
가	사후관리 (17)	사후관리 계획	7	5	4	3
		수행중 안전관리	5	4	3	1
		사업완료시 기대효과	5	3	1	0

□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내용 및 구성

1-1 제안서 내용(제출부수 11부)

- 1장 인프라(사업 필요성 및 민원 인허가사항)
- 2장 참여기관(참여기관 적정성 및 기관별 역할, 계획)
- 3장 사업추진(에너지원 용량구성에너지원별 시공계획, 컨소시엄 차별성, 당해연도 완료계획)
- 4장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 5장 기타 제안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1-2 제안서의 구성

- 가. 제 I 권 : 제안자 현황평가서(제출부수 2권, 칼라원본 1권 포함)
 - 대표사 기술인력상태,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계량 평가 항목
- 나. 제 II 권 : 비계량 제안서(제출부수 각 11권, 칼라원본 1권 포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작성

2. 제안서 형식

2-1 비계량평가

가.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1.1, 2.1, 3.1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1.1 → (14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
(1) -----
(가) -----
① -----

나. 기술제안서의 본문내용은 200쪽 이내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되, 쪽 번호 형식 (-1-, -2-), 대항목별로 간지(분홍색 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 목차 및 간지는 쪽에서 제외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2-2 비계량 자료 작성방법

가. 목 적 : 비계량 평가 시 심사위원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함.

나. 작성방법 : 파워포인트

다. 작성내용 : 기술제안서 목차 내용

라. 시간분량 : 15분 이내

2-3 제안서의 인쇄/제본형식

가. 인쇄형식

1) 제안서 규격 : A4용지(210mm x 297mm), A3용지(297mm x 420mm)

2) 표 지 지 질 : 백색 레자크지(200g/m², 무광택, 코팅금지)

3) 본 문 지 질 : 백상지, 80g/m²

4) 간 지 지 질 : 분홍색 색지(견출지 부착 안됨, 대항목만 적용)

5) 인 쇄 방 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기술제안서는 양면인쇄)

6) 제 본 방 법 : 무선철에 의한 제본(좌철)

※ 제 I 권은 제본하지 않고 별도 제출(링바인더 형식 등으로 제출)

나. 원본을 제외한 모든 제안서의 내용에는 칼라인쇄 및 칼라용지 삽입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외래어로 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 형식에 따라 누락 분야 없이 명확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함. 또한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분량(20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원본은 관리번호를 1/11로 기재하며, 사본은 2/11~11/11로 기재하여야 함.

다. 제안자현황 평가서의 원본은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본대조필”표시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매쪽마다 원본대조필은 생략하되 책자의 앞면에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的一部分로 간주함

마.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 해설을 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자.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차.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유로 귀속한다.

타.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업체를 인식 또는 상대 업체와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00시(군) 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청서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상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선정되
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참여업체 대표 (인)

- 별첨 1.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2. 평가지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분야별 면허증 사본 각 1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 1개인 경우는 '(대표)주관기관'에만 작성

[별 첨]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권소사업 구성
참여기업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참여기업(주관기업) 대표자 : (인)

□ 평가 항목 증빙자료

※ 작성시 주의사항

- 사업공고문의 “평가항목” 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할 것
- 1개의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의 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원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할 것 (예. 태양광 증빙자료(1~3번), 태양열 증빙자료(1~3번))
- 시공실적 증빙서류중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설치의무화) 증빙은 설치내용란에 신청자(소유자)명, 증빙서류1에 설치확인 신청번호를 기입할것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식별 불가시,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음

예시) □ 한국솔라 증빙자료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__명, __월, 기능사 __명, __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개월)
산업기사 이상	1				
	2				
	3				
	4				
	5				
	6				
	7				
	8				
	합계				
기능사	9				
	10				
	11				
	12				
	13				
	14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성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1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시공실적

가. 총괄표

번호	설치내용	설치완료일	설치용량	설치개소
1	예시)2019 행복시 융복합사업	2019.12.10.	90kW	30
2	예시)2019 대한시 지역지원사업	2019.11.30.	50kW	2
3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1(이미지파일)	증빙서류2(이미지파일)
1			
2			

3 기업신용도

가. 신용도 등급 : _____

나. 증빙서류(이미지파일)

4.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실적

가. 총괄표

구 분(사업명)	내용	비 고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나. 증빙서류

공 고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22.11.15.)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관리주체가 변경됨(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감면대상 변경 및 감면기한 연장(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 감면대상 변경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여수광양항만공사
 - 감면기한 연장 :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감면범위를 변경함(안 제8조의2 제1항)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박람회 특구 내 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입법 예고기간 : 2023. 4. 7. ~ 4. 27.(20일간)

4.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pcwan@korea.kr
- 전 화 : 061-659-3527
- F A 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을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으로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 2025년 12월 31일까지 ----- -----.</p> <p>② ----- ----- ----- ----- -----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p> <p>③ (현행과 동일)</p>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m ²)	사용기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전면해상	죽도여등표 설치공사	18.85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4. 10. ~ 2023. 4. 28.(19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4. 10. ~ 2023. 4. 28.(19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항만레저

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어업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0.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 사업비 : 4,075백만원(도비 1,630^{40%}, 시비 2,445^{60%})
- 사업량 : 43,000,000리터(ℓ)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 ※ 근해어선의 경우 선적항이 도내 항이나 소유자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2022. 11. 1. ~ 12. 31.까지 면세유 수급 어가에 올해 1분기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 수준 지원
 - ※ 예산 상황에 따라 그 전 기간도 소급적용 가능
- 지원단가 : 유종별 리터(ℓ)당 정액지원
(경유 176원, 휘발유 94원, 중유 143원)
 - ※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등 변경 가능

2. 신청기간 : 2023. 4. 10. ~ 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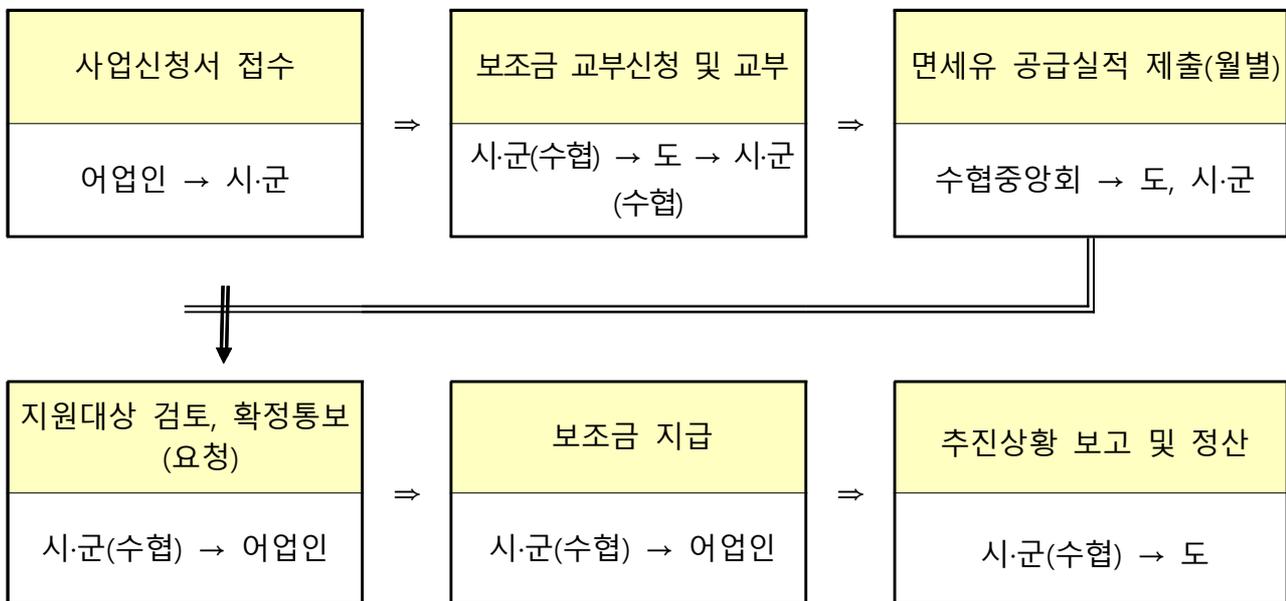
3. 신청장소(방문접수) : 수산경영과(국동 임시별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4. 신청대상 : 2022년도 면세유 지원사업 미 신청자(작년 신청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5.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관리선 지정증(양식어업 면허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면세유류카드

6. 사업 추진절차



7. 문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김재선(☎659-3918)

붙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울촌 가장·화양 이천·소호 향호)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아직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불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6명(가장지구 24명, 이천지구 25명, 향호지구 7명)
2. 공고기간: 2023. 4. 11. ~ 2023. 4. 25.(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울촌면·화양면·쌍봉동사무소
4. 기타사항: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25, 3474, 3475)으로 문의 바랍니다.
5. 불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2. 4. 11.

여 수 시 장(인)

전문건설업체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의2 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소명자료 제출내용	관련법
㈜서일이엔씨 (김철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여수시 신기북2길11 (신기동)	보증가능금액실효 에 따른 소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의2

2. 공고 기간 : 2023. 4. 10. ~ 4. 24. (14일간)

3. 자료제출기간 및 제출 처 : 2023. 4. 10. ~ 4. 24. (14일간)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소명 자료제출목록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광역시제외)홈페이지 및 게시관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6. 기 타

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2023. 4. 24.까지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여 수 시 장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 모집 (2차) 공고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따라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 모집 (2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3. 4. 10. ~ 2023. 4. 20.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3. 신청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로서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지원내용

- 빈집정비 보조사업 : 소유자 직접 철거 시 동당 3백만원 철거비용 보조

5. 지원규모 : 16동 (48,000,000원)

-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별도 신청

6. 지원절차



7. 선정기준

- 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일 경우

구분 \ 배점	배점	세부배점	
계	100점		
건축물 구조 안전성	40점	지붕 및 외벽 파손상태	20점
		건축물 기울어짐 정도	10점
		기초 침하 정도	10점
생활 위생	20점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방치 상태	10점
		해충 유해동물 서식 여부	10점
경관성	20점	외부 마감재 노후 정도	10점
		창문 등 기물 파손상태	10점
취약계층, 사업 연계성	20점	취약계층 대상 여부	10점
		슬레이트사업 연계성	10점

8.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사진대장(빈집 철거 전 장면 촬영)
-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 다. 건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2)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9. 기타 유의사항

- 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빈집 철거와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나.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659-4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	신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곳		
	연락처(H.P)	핸드폰 또는 집 전화		
지원신청 사 업	빈집 정비(철거) 보조사업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참고)	건물위치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축연도	00년00월00일	건물규모(㎡)	연면적㎡
	건물구조	블록/흙 등	지붕구조	슬레이트/슬라브 등
	철거 예정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철거하고자 하는 날짜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도로이격거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자원순환과 연 계 사 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했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작성)		신청 □, 미신청 □	
	석면슬레이트 지붕면적(㎡)		슬레이트 면적	
<p>「여수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여 수 시 장 귀 하</p>				
첨부서류	사진대장 1부,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별지 2)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기존 건축물(사업 전) 사진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 전·중·후 사진 제출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 청 인	주 소 : 신청일 기준 살고 있는 곳	성 명 :
사업위치	빈집 위치 : 빈집 주소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사업 후 (철거 대지)	“3 × 4”	

(빈 집)소유사실확인서

건축물현황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작성함)

건축물 위치	등기 소유자	구조	연면적 (m ²)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_____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인, 연대보증인, 이·통장) 각 1통

2023. .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이·통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3. . .

읍 면 동 장 인

[별지5]

빈집(건축물) 철거 신청인 명단

연번	신 청 인			빈집 건축물 현황					슬레이트 지붕 여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 여부 (지붕면적)	취약 계층 여부	철 거 후 사용용도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건축 면적	건물 구조(지붕)	건축 년도	도 로 이격거리				
												신축, 주차장, 꽃밭 등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별지 6]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포기할 경우 작성)

사 업 포 기 서

사 업 명 :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사 업 내 용

- 위 치 :

- 성 명 :

본인은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위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7]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때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사업명 : 2023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업장소 :
- 보조사업의 목적 : 빈집정비
- 보조사업의 내용 : 빈집철거

◇ 보조사업 소요경비 ◇

총 소요액	원	자기부담액	원
신청액	원	기 타	원
사업수행기간	2023. . . ~ 2023. . . .(일간)		
사업 계획서	별 첨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여수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7-1]

보조금교부결정서

2023년 월 일

문서번호 : 건축과 -

사업대상자 :

2023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 빈집 철거지원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결정 교부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액 : 원

○ 보조금과목 :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비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여 수 시 장

[별지 7-2]

읍면동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면	대상자수	교부결정액(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계						
1						
2						

[별지 7-3]

개인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위치	한옥 건축	교부결정액(원)		
		주소	성명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2								

교 부 조 건

1. 본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교부한다.
2.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6.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거나 차후 관계법령에 위반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8. 읍·면·동장이 인정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읍·면·동장에게 완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가. **철거공사 시작전** 필히「건축물 해체신고」(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해제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서(주택 200㎡이상, 일반건축물 50㎡이상)
 - 나. 빈집 철거 후 「건축물 해체완료신고」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659-4118~9)
 - 완료신고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철거 후 사진
 - 말소신청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후 사진
 -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해당없음
 - 다. 철거 및 정비 잔재물의 정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슬레이트 및 석면 종류의 자재는 전문 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함.
 - 라. 본 빈집정비(철거)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정비.철거 전반에(정비.철거 후, 소유권분쟁.인접건축물피해.철거규칙준수, 각종피해사고 등)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8]

(사업 대상 확정자가 빈집 철거 완료 후 작성)

빈집 철거지원 사업 완료 신고서

사업자	사업위치	빈집정비(철거) 내용				사업 기간			건축물 대장말소 여부	폐기물 처리 규정준수
		건 물 연면적	용도	주요 구조	지붕 재료	착공일	준공일	교부금 사업자		
신청자 이름	빈집 위치					해체 신고일	해체 완료 신고일	신청자 이름	무허가 미해당	준수 여부

위와 같이 빈집정비(철거)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고 및 확인 검사
조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사업완료사진(전,중,후)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폐기물처리확인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건축물대장말소확인서류 1부

2023.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검사)자(읍면동담당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9]

(사업 대상 확정자가 빈집 철거 완료 후 작성)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사업자 : 신청자 이름
- 교부결정액 : 보조금 결정액 원
- 청 구 액 : 원
- 사 업 내 용 : 빈집(건축물) 철거
- 사 업 량 : 동/ m² 철거
- 사 업 기 간 : 2023. . ~ 2023. .

위와 같이 2023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3. . .

송 금 계좌번호 :

은 행 명 :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고병원성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여수시장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기 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3. 지 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
3.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툽밥·갈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5. 명령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8건*
6. 기타사항
 -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나. 문의사항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 061-659-4445)

붙임 1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벌칙
행정 명령 (8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8.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공고 (7건)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 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에 적용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 4. 12일부터 적용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7.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소유자등”이라 한다),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에 적용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 4. 12일부터 적용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3	<p>산란계 밀집사육 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p>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5	<p>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시군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6	<p>가금농장 (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p>*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p>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라남도 및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에 적용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 4. 12일부터 적용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수시 공고 제2023-1181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105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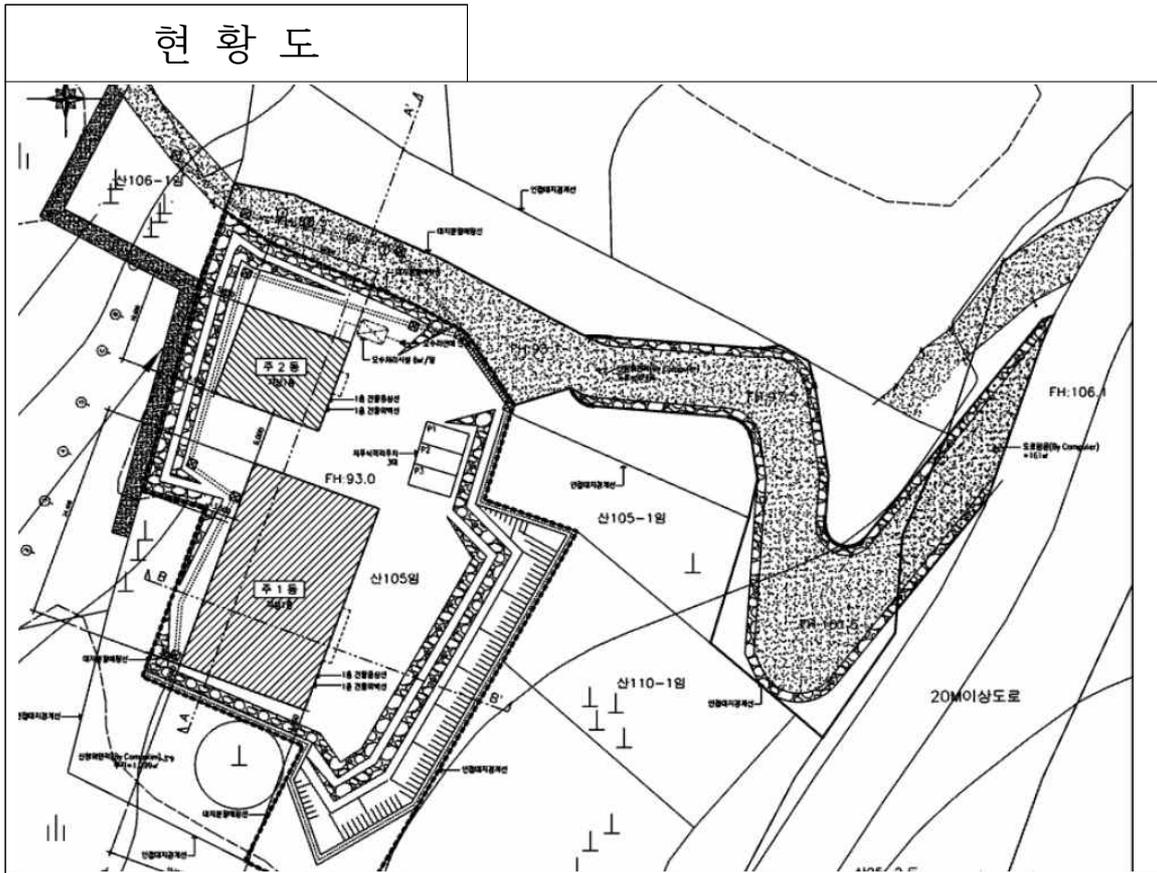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 105번지
2. 도로면적 : 974m²
3. 도로길이 및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507	974
	돌산읍 둔전리	산 105	임	4,507	974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응천동 188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장영숙 외 1인

다. 시 공 자 : 공간종합건설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 더존건축사사무소 정집문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응천동 1881-3번지

2) 내 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5층, 1동 / 연면적 3,257.99㎡

3) 공사기간 : 2023. 3. ~ 2023. 12.

4) 순공사비 : 2,700,000,000원(VAT 별도)

5)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2. 7. 12.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항타,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860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17.(월)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3. 4. 18.(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3. 4. 19.(수) 13: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4. 20.(목) 15: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

- 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 매각단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3년 여수시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 매각 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 9개 품목[폐지, 혼합 고철, 철캔, 알루미늄캔, 공병류, 잡병류, 투명PET, PET병, 혼합 플라스틱]

다. 계약기간 : 2023. 5. 3. ~ 2024. 5. 2.(1년),(단, 다음연도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가능)

라. 입찰내역 (단위 : 원, kg)

구 분		반출상태	예정단가	예상물량	예 정 기 초 금 액	비 고
계(9개 품목)				1,436,000	146,810,000	
종이류	폐지	비압축	50	695,000	34,750,000	
고철류	고철(혼합)	비압축	230	24,000	5,520,000	
	철 캔	압축	230	60,000	13,800,000	
	알루미늄캔	압축	1,000	18,000	18,000,000	
유리 병류	공병류 (소주,맥주)	비압축	100	56,000	5,600,000	
	잡병류 (백색,청색,갈색)	비압축	10	240,000	2,400,000	
합성 수지류	투명PET병	압 축	230	60,000	13,800,000	
	PET병	압 축	200	100,000	20,000,000	
	플라스틱 (혼합)	비압축	180	183,000	32,940,000	

※ 상기 매각예상 발생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실제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간재활용 상태의 매각 품목은 계약업체에서 재처리 없이 매각할 수 없음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처	입찰집행(개찰)	개찰 장소	계약체결
2023. 4. 12. ~ 4. 18. 16:00까지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2023. 4. 19. (10:00)	여주시 자원순환과 입찰관 PC	2022. 4. 28.(금) 18:00까지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과정을 확인 후 입찰 권장

주의) 입찰서 제출 시 품목별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품목별 희망단가에 매각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투찰하여야 함.(낙찰될 경우 kg당 예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적용 계약)

3. 입찰 집행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총액입찰)이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됨.
- 나. 입찰금액은 품목별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입찰금액 중 예정기초 합계금액 [(2023년 품목별 매각 예상물량 × 예정단가)의 합]을 기준으로 **최고가 낙찰제**로 함.

4. 입찰 참가 자격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 범용인증서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중 하나를 득하고,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고,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마.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내에 있는 사업자로서

-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5. 입찰서의 제출

- 가.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함.
- 다. 입찰서 제출은 시스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참가자가 시스템 서버에 접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 처리하며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은 불가함.
- 바.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

6. 입찰보증금 납부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순환자원정보센터”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납부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때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가능함.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생한 수표를 입금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재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 공고)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42조 규정에 따르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낙찰자의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입찰금액 중 예정기초 합계금액(2023년 품목별 매각 예상물량 × 예정단가)의 합] 이상의 **입찰**

금액 중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계약은 입찰금액이 아닌 품목별 kg당 단가계약(품목별 예정단가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며 품목별 kg당 예정단가 이상으로 연간 매각단가로 계약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예정금액(계약단가별 × 연간 예상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재활용품 미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라. 낙찰 계약자의 재활용품 반출방법 및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이행계약서에 명시하되, 매각물품 인수 후 7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마.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 계약단가의 30%이상 가격 상승이나 하락 시 단가조정 협의 가능하며 매각단가 조정 시 변경된 매각단가는 조정한 날로부터 적용함.

※ 기준 : 한국환경공단 3개월 평균 통계에 의함.

바. 낙찰 및 계약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한 경우와 상기 “가”, “다”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함.

※ 계약기간은 2023. 5. 3. ~ 2024. 5. 2.(12개월간)로 하며 매각예상량 또는 매각 예정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단, 다음연도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는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재활용품의 반출은 여수시 월내동 1420에 소재한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계약업체의 비용과 책임으로 포장(마대제공 등), 상차 및 운반하는 조건임.

아. 반출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미납 매각대금의 합이 이행(지급) 보증보험

- 증권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품 반출이 불가함
- 자. 재활용선별장에 적치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수시에서 요청 시 24시간 이내 즉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함.
- 차. 기타 계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참조.

11.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보증 관련 보증보험증권, 정부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계획서(차량, 운전자 현황 등) 1부

12.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재활용품은 월내동 소재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류한 상태로 반출할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물품의 분류상태 등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낙찰 후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다.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은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포장, 상차 및 운반은 낙찰자가 마련한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반출작업에 필요한 마대(PP마대, 톤백 마대)등의 소모품은 자체 조

달하여야 함.

- 라.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 반출시 계근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계근은 인정하지 않음.(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다른 장소에서 계근할 경우 계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성상, 선별·보관 상태, 연중 기후조건에 의한 수분함량 등과 관련 별도의 감량률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입찰시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 처리한 당해 재활용품의 선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입찰 바람.
- ※ 단, 우천 시 등 감량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감량 조정할 수 있다.
-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여수시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www.re.or.kr
- 입찰방법 문의처 : 1800-8830

나. 매각물품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문의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061-659-3839)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3. 4. 12.

여 수 시 장

재활용 가능자원 [스티로폼(인고트)] 매각단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3년 여수시 재활용 가능자원 [스티로폼(인고트)] 매각 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 1개 품목[스티로폼(인고트)]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8개월),(단 다음연도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가능)

라. 입찰내역 (단위 : 원, kg)

구 분		반출상태	예정단가	예상물량	예 정 기 초 금 액	비 고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인고트)	감 용	500	100,000	50,000,000	

※ 상기 매각예상 발생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실제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적치 예정물량 약70톤 이상 포함이며, 적치 예정물량을 우선 반출하여야 함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처	입찰집행(개찰)	개찰 장소	계약체결
2023. 4. 12. ~ 4. 18. 16:00까지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2023. 4. 19. (10:00)	여수시 자원순환과 입찰관 PC	2022. 4. 28.(금) 18:00까지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과정을 확인 후 입찰 권장

주의) 입찰서 제출 시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희망단가에 매각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투찰하여야 함.(낙찰될 경우 kg당 예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적용 계약)

3. 입찰 집행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이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됨.

나. 입찰금액은 품목별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입찰금액 중 예정기초 금액

[(2023년 매각 예상물량 × 예정단가)]을 기준으로 **최고가 낙찰제**로 함.

4. 입찰 참가 자격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 범용인증서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사업자로써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마.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5. 입찰서의 제출

- 가.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함.
- 다. 입찰서 제출은 시스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 참가자가 시스템 서버에 접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함.
-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 처리하며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은 불가함.

바.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순환자원정보센터”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납부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때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가능함.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생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재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규정에 따르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낙찰자의 결정

-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단가 이상의 가격으로서 입찰금액 중 예정기초 금액[(2023년 매각 예상물량 × 예정단가)] 이상의 **입찰금액 중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가. **낙찰률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며 품목별 kg당 예정단가 이상으로 연간 매각단가로 계약하여야 함
- 나. 낙찰자는 **낙찰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예정금액(계약단가별 × 연간 예상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재활용품 미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 라. 낙찰 계약자의 재활용품 반출방법 및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이행계약서에 명시하되, 매각물품 인수 후 7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인고트)) 계약단가의 30%이상 가격 상승이나 하락 시 단가조정 협의 가능하며 매각단가 조정 시 변경된 매각단가는 조정한 날로부터 적용함
- ※ 기준 : 한국환경공단 3개월 평균 통계에 의함.
- 바. 낙찰 및 계약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한 경우와 상기

“가”, “다”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함.

-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8개월간)로 하며 매각예상량 또는 매각 예정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단, 다음연도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는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 재활용품의 반출은 여수시 월내동 1420에 소재한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계약업체의 비용과 책임으로 포장(마대제공 등), 상차 및 운반하는 조건임.
- 아. 반출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미납 매각대금의 합이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품 반출이 불가함.
- 자. 재활용선별장에 적치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수시에서 요청 시 24시간 이내 즉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함.
- 차. 기타 계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참조.

11.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보증 관련 보증보험증권, 정부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계획서(차량, 운전자 현황 등) 1부

12.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재활용품은 월내동 소재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장” 에서 분류한 상태로 반출할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물품의 분류상태 등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낙찰 후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다.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인고트))은 “여수시 관내” 에서 발생된 것으로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포장, 상차 및 운반은 낙찰자가 마련한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 하며 재활용품 반출작업에 필요한 마대(PP마대, 톤백 마대)등의 소모품은 자체 조달하여야 함.
- 라.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인고트)) 반출시 계근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계근은 인정하지 않음.(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다른 장소에서 계근할 경우 계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인고트))의 성상, 선별·보관 상태, 연중 기후조건에 의한 수분함량 등과 관련 별도의 감량률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입찰시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 처리한 당해 재활용품의 선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입찰 바람.
※ 단, 우천 시 등 감량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감량 조정할 수 있다.
-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여수시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www.re.or.kr
- 입찰방법 문의처 : 1800-8830

나. 매각물품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문의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061-659-3839)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3. 4. 12.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근거법률 추가) 「도서관법」→「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정) '12. 2. 17. / (시행) '12. 8. 18.

- (등록가능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변경)

도서관 면적 33㎡ 이상 + 1천점 이상 도서관자료 비치 + 6석 이상의 열람석 → 도서관 면적 33㎡ 이상 + 1천점 이상 도서관자료 비치

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문 정비

- 공립 작은도서관을 2020년 3개소, 2021년 5개소 등 총 8개소*를 신설 또는 공립 전환하여 운영 중임.

* [신설] 동부도시보건('20.7.), 치매안심센터('20.9.), 청솔글누리('21.2.), 화양열린('21.2.), 여문늘벗('21.2.), 국동('21.8.)

[공립 전환] 은빛바다('20.1.), 꿈을키우는('21.2.)

- 현 조례는 입법 당시('12.3.)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조례 전문 개정 필요

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문 신설

-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 이행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
 -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지식정보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 노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예산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조문 신설
 -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자 활동비, 도서구입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 진작 활동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해당 연도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인력양성 및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상위법령 상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제출 강행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이행조항 신설
- **(평가)** 매년 1회(상반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한 실적이 우수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음년도 보조금을 지원중에 있으므로 근거 조항 명기
- **(포상)**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관심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장을 구분하여 체계적·포괄적 정비(안 제1장~제6장)

- 총칙(제1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신청 등(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제4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제5장), 보칙(제6장)

나. 제1장 총칙

○ 조제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① 작은도서관 육성 노력, ②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신청 등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기능(안 제5조~제7조)

- 주민 접근성 고려, 개방에 어려움 없는 공공시설 내 설치
- 33㎡이상의 도서관 면적,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 구비

○ 등록신청, 취소 및 폐관(안 제8조, 제9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시설 유지 불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규정
- 등록 취소 또는 폐관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자료 및 물품 등 반납 의무, 필요시 타 작은도서관 이관 가능

라. 제3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 여수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에서 심의
- 각 사립 작은도서관 내 운영위원회 구성 가능

○ 구성 운영 및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회의(안 제12조~제15조)

-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 구성사항, 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
- 사망, 전출, 사퇴, 직무 수행불량 등의 사유로 인한 위원 해촉사항
-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 및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1/3 요구시) 개최,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비치

마.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 운영시간 및 휴관(안 제16조, 제17조)

○ 운영 및 관리(안 제18조)

- 공립 작은도서관은 담당부서의 장 책임 하 관리·운영

-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 책임 하 관리·운영
- 작은도서관 관할 읍면동장의 운영 협력 조항 명시
- 운영자 자격 및 직무, 임명·해촉(안 제19조, 제20조)
- 이용제한 및 자료 분실·훼손 책임(안 제23조, 제24조)
- 예산의 지원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지도·감독(안 제26조~제28조)
 -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 예산 지원
 -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인력 교육, 지역사회와 협력사항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 기업 등 후원 진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실시
 - 작은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및 시정 조치 요구

바. 제5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 실태조사(안 제29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이행 및 협조 명시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안 제30조)
 -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 평가에 비협조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축소

사. 제6장 보칙

- 포상(안 제31조)
 -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기업 포상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안 제32조)

3. 입법 예고기간 : 2023. 4. 12. ~ 5. 1.(20일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도서관운영과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응천6길 51(응천동), 여수시청 도서관운영과
- 전 화 : 061-659-2853
- 팩 스 : 061-659-5856
- 전자메일 : rokafksh@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여수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계 법령”이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도서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신청 등

제5조(공간과 위치)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면적
2.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도서관자료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취소 및 폐관) ①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는 폐관신고서와 발급받은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자료 및 물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개관·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자 선정과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전출, 사망 등으로 해촉될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지연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제16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 운영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일
3.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전까지 휴관일자와 사

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방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단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의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관리한다.

③ 작은도서관 관할 읍·면·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지역여건 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운영자의 임명 및 해촉)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 외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1명 이상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당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작은도서관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경우

2.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대출한 이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 반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

5.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② 운영자는 도서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립 작은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자 활동비 및 도서 구입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될 수 있고,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제2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시행 전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정관
3. 작은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작은도서관 자활능력과 후원 제도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 사항
6.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교육 참석 상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 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와 기업 및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